

# 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Regulation

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 
회계·감사 품질 제고방안

2026.02.11

감사위원회 지원센터  
(Audit Committee Institute)

# 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회계·감사 품질 제고방안

## 증권선물위원회,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「회계·감사 품질 제고방안」 발표

지난 2월 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아래 5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 
「회계·감사 품질 제고방안」을 발표하였습니다.

### 1. 시장퇴출

고의 회계부정지시자는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자격 박탈

### 2. 감독강화

‘저가수주’로 회계·감사품질을 떨어뜨리면  
감사인 교체 및 심사·감리 착수 등 강력 제재

### 3. 사각지대

최대주주가 빈번히 변경되거나 임직원 횡령이 발생한  
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직권지정 감사 실시

### 4. 경쟁촉진

감사품질 우수 법인이 지정감사 일감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 
감사인 지정방식 개편

### 5. 거버넌스

대형 회계법인(빅4)에 독립된 ‘외부전문가’ 과반수(위원장 포함)로 구성된  
‘감사품질 감독위원회’(내부 견제기구) 설치·운영 의무화

「회계·감사 품질  
제고방안」

Source: 증권선물위원회,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여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, 2026.2.4

# 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회계·감사 품질 제고방안

## 1. 회계부정 지시자(임원, 소유주 등) 시장 퇴출

### 개선 필요 과제

- 회계부정 적발로 이를 주도한 임원 등이 해임권고 되어도, 이후 계열사 및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

### 제고 방안

-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,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(업무집행지시자)에 대해 당해회사 해임·면직 권고, 직무정지, 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함
  - 제한대상자는 일정기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됨
  - 상장사는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이 요구됨
- ❖ 자본시장법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

### 제재

- 제한 대상자 및 취업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이미 재임중인 제한 대상자에 대한 해임을 거부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**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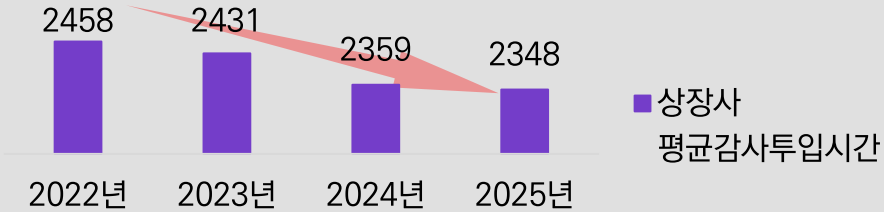
# 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회계·감사 품질 제고방안

## 2. 부실감사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부과

### 개선 필요 과제

- 과도한 수임경쟁으로 감사투입시간을 과도하게 줄여서 회계부정을 놓칠 가능성이 높으며, 최근 감사투입시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



### 제고 방안

-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하여 감사한 경우 심사·감리 대상 선정시 우선 고려
  - 점검 결과 실제 부실감사가 확인될 경우,
    -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정부가 교체
    - 부실감사를 사실상 용인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정감사와 함께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회계부정 여부 확인

### 제재

- 회계법인이 감사품질(등록요건)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, 위반수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 도입
- 특히, 중대위반이 다수 발생한 경우  
**상장사 감사 금지 혹은 지정감사에서 배제할 수 있음**

# 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회계·감사 품질 제고방안

## 3. 지배구조 취약 비상장기업 지정감사 확대

### 개선 필요 과제

- 비상장회사에서 지배구조가 취약하여,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경영진이 회사자금을 횡령하더라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받지 않고 있음\*

### 제고 방안

- 대형 비상장회사(자산 5천억원 이상) 중에 최대주주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변경 되었거나 횡령·배임이 발생한 경우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할 계획

비상장회사에 대한 직권지정 감사대상을 합리적으로  
확대하여 외부감사의 실효성 강화

\* 상장회사의 경우 최대주주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변경 또는 소속 임직원 횡령·배임 발생시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에 해당

# 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회계·감사 품질 제고방안

## 4. 감사품질 우수 회계법인 보상체계 강화

### 개선 필요 과제

- 회계법인을 규모별로 분류하는 ‘군 분류’ 체계로 인하여 우수한 중견회계법인이 상위 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

### 제고 방안

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회계법인이 시장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

- 자본시장 성장, 최근 소송가액 증가를 고려해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을 일괄 2배 상향
- 군 상향 특례 제도를 도입
  - 감사품질 최상위 평가를 받은 중견회계법인은 상위군에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됨
  - 다만, 손해배상능력을 기준보다 1.5배 더 쌓도록 조건 부가
- 감사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 확대
  - 감사인 점수 산정시 현재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(최대 10%) 외에 감점(최대  $\Delta$ 10%)을 추가 신설
  - 군별 상대평가 도입으로 감사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를 확대

# 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회계·감사 품질 제고방안

## 5. 대형 회계법인 내 외부전문가 중심의 “감사품질 감독기구” 설치 의무화

### 개선 필요 과제

- 감사품질 관리·감독기구 등 견제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으나, 대체로 외부전문가 참여 없이 내부인원만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

### 제고 방안

-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대형 회계법인의 의사결정 체계가 감사품질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감독기구인 ‘감사품질 감독위원회’(가칭) 설치를 의무화
  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과반수를 회계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
  - 회계법인의 경영진이 감사품질을 소홀히 하는지 감독하고,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아 회계법인의 공익적 내부 견제기구로 기능
  - 회계법인은 위원회의 구성현황과 주요 활동내역을 매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함